

# 속 기 록

- 회 의 명 : 제 254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19. 7. 26(금) 15:00 ~ 18:15
- 장 소 : 대학로 예술가의 집 2층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종관 위 원 장  
강윤주 위 원  
강홍구 위 원  
김기봉 위 원  
김혁수 위 원  
나종영 위 원  
이희경 위 원  
조기숙 위 원  
최창주 위 원

## 1. 성원 보고

### ○박종관 위원장

- 곳은 날씨에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팝업시어터 피해 관련 당사자의 대면사과 발표가 있었고 지난 24일에는 2020년 예산과 관련해서 기재부에 설명을 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T/F 활동과 6기 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기 이전까지 비전 T/F를 가동해서 아르코비전2030 계획을 발표하기 위한 일들이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2019년도 7월 전체회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2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 있고, 13개의 보고안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13개 중에서 중요도 순서나 논의할 내용이 있는 보고사항부터 먼저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처장은 성원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이승정 위원님을 제외한 위원 10인 중에서 9인이 참석해서 성원이 되었습니다.

## 2. 개 회 선 언

### ○박종관 위원장

- 보고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4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께서는 전차(前次)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예, 전차(前次) 회의 관련 내용은 위원회 회의자료 3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난 253차 회의에서는 7개의 의결안건이 상정되어서 5개 안건은 원안대로, 2개의 안건은 수정해서 의결이 되었습니다.

#### 4. 의 결 사 항

##### ○박종관 위원장

- 혹시 전차(前次) 회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개의 의결안건 중에서 첫 번째 의결안건은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첫 번째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은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설명 드리면, 사무처에서 위원회 개정을 목적으로 한국법령정보원이라는 전문기관에 컨설팅 의뢰를 하였는데 그 검토 내용 중에 여러 가지 규정개정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위원회 운영체계 중에 중요한 기본규정이라고 해서 11가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 기본규정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그 기본규정 중 사무처 기본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1항입니다. 좌측에 삭제표시가 된 부분은 불필요한 문구와 중복된 어휘를 삭제해서 매끄럽게 한 부분입니다.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 내용을 굳이 명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명한다.”에서 ‘위원장’이 2번 중복되었기 때문에 삭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5항입니다. 제4조 제5항은 신설된 규정이지만 내용이 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원래는 사무처 운영규정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 내용에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행세칙에 규정할 것이 아니라 상위 규정인 사무처 운영규정에 규정해야 될 사항이라는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세칙에 있던 부분을 사무처 운영규정으로 옮겨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무처장 유보 시에 직무대행에 관한 근거를 설정한 것입니다.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순서대로 선임본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제6조 제6항입니다. “사무처장 하부 조직 및 업무분장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라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별도’ 라는 것을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 이라는 명시적인 규정

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서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라고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별지’가 ‘별표’로 구성되었는데요. ‘별지’라는 것은 어떤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식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별표’ 라는 것은 이미 내용이 확정된 것을 표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별지’ 보다는 ‘별표’가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안건번호 제756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종영 위원

- 한 가지 여쭙보겠습니다.  
사무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가 끝나야 되지 않나요?

####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사무처장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있습니다.

#### ○나종영 위원

-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무처장의 임기가 3년으로 끝났는데 “사무처장의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이미 3년으로 끝났으면 선임부장이 대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임기가 만료된 사무처장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면 임명이 안 되면 그냥 계속하는 건가요? 그럴 경우에는 선임본부장이 대행을 해야죠.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보통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유지하는 것이 통상적인 것입니다.

#### ○나종영 위원

- 끝나야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해 주십시오.

####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도 임명할 때까지 자동적으로 연장이 되는 사항입니다.

#### ○나종영 위원

- 위원들은 그것을 대행할 수 있는 체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무처장의 경우 수행할 수가 없는 경우 6조 1항에 따라서 순서대로 선임본부장이 직무를 대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들은 대행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전효관 사무처장

- 여기에 보니까 2015년 2월에 신설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전에는 없었던 건가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 그 전에는 없었던 규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나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4조의 2항과 4항이 내용적으로 서로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법률의 해석을 받아서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규정심의위원회의 상위 결정기구로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다시 제4조 4항을 삭제하고 확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신지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왜냐 하면 사무처장 선임과 관련해서는 선임절차를 세세히 보완하겠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그것은 빠르면 8월 전체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예정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8월에 하든 아니면 그 이후든지 충분한 제도를 만들고 사전에 검토를 받고요. 사무처장과 관련한 운영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이 먼저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시다만, 지금 문제 제기를 하신 내용은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할만한 논의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접수하기로 하고 다른 조항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윤주 위원

- 8월에 올려주신다는 조항은 지난번 사무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예술위원들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의견을 모을 수 있는가?” 그런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8월에 나온다는 것인가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8월로 예정되어 있지만, 9월 이전에 사무처장을 뽑을 일은 없으니까요.

○강윤주 위원

- 만들 생각은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박종관 위원장

- 예.

○이희경 위원

- 지금 사무처운영규정 시행세칙이 그 내용 아닌가요? 별도로 만들고 계신 건가요?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그 사항은 사무처운영규정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세칙은 사무처운영규정의 하위 규정으로 사무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서 반영되어지는 것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번에 개정을 하시고, 다음 회의에서 또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 위원

- 제가 보기에 사무처장에 관한 사항은 4조 5항의 “사무처장이 부득이한 사유” 하고 “사무처장의 임기가 만료” 이것은 서로 다른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선임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을 사무처장 임기가 만료된 후에 선임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의 임기가 끝났을 때 새로운 사무처장이 뽑힐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예를 들어 새로 대행이 들어와서 인수인계를 받고 다시 또 인수인계를 하는 등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고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윤주 위원

- 저도 나중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고민을 했는데 강홍구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임기가 만료되었지만 그 분은 부정한 사유로 임기를 못 마친 것이 아니고요. 임기가 만료되었다는 것은 어쨌든 그 업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임기가 만료된 직후에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닌 비상상황인 경우에는 전임자가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말씀하신 대로 선임본부장이 그 업무를 맡을 경우에는 뭔가 인수인계를 받고 짧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 후에 신입 사무처장에게 넘겨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제안하신 내용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창주 위원

- 그리고 제4조 제1장을 보면 그 내용이 맞아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시다만, 이것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가 않네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음 규정 개정안건으로 올릴 것입니다.

○최창주 위원

- 1차 5본부제가 맞죠?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출 감사

- 임명절차 부분들은 안건으로 올릴 부분이고 그때 임기 부분도 같이 엮어서 임기만료 부분도 논의하면 어떨까요.

○박종관 위원장

- 감사님, 그 부분은 강홍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대로 사무처장의 경우에는 인수인계 등 임기를 끝내고 그냥 종료하는 것에 비해서 위원회에 이득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이미 얘기가 된 것이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있는 조항을 남겨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선출 감사

- 가령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에서는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직 같은 경우 대행이 없으니까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임무를 맡는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장의 경우는 대행으로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절차가 1~2개월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공모직 같은 경우 그런 규정을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임기 3년에서 잔여부분을 수행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시의 개방직 같은 경우에도 “5년 임기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종영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을 고집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개정을 하려면 법리적으로 맞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행은 순서대로 선임한다.”는 것과 상충이 되니까 그게 맞는지를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해 왔어요?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이 조항이 2015년에 신설된 이유가 사무처장 임기가 종료된 후에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 공백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필요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다만, 현재 판단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임기를 마친 사무처장이 3년 이후에 그냥 임기를 종료하고 나가는 것에 비해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 제대로 인수인계를 한다거나 하는 절차를 갖는 게 오히려 이득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조항이 다시 들어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만 공유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김기봉 위원

- 없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원안대로 의결 처리하려고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다음 의결안건은 2019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잔여예산 활용 연극 및 뮤지컬 대본공모 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위원회 회의 때 잠깐 언급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저희가 올해 공연예술창작산실사업을 운영하다가 심의 때 잔여예산이 된 부분들을 중심으로 불용예산을 방지하고 최대한 의미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복안이 있음을 말씀드렸고요. 예전에 중단되었던 사업을 다시 복원해야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연극과 창작뮤지컬 쪽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대본공모 사업 추진계획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12페이지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저희가 각 분야별로 현장에 계신 분들과 연석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안에서 공연예술 연석회의에서 나왔던 대본발굴지원 부활의 필요성과 단계별 제작지원을 표방하고 있는 창작산실지원사업의 첫 단추를 잘 꿰서 추동력 있게 연계 지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회의를 했고, 2016년 이후에 중단된 것을 다시 복원시키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을 발판삼아서 내년도 정시공모사업부터는 조금 더 지속적인 사업으로 완착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목적은 무대 공연 발표 및 레퍼토리로 발전 가능한 참신한 작품을 발견해서 무대화 전 단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수 창작 작품 공모를 통해서 창작자의 창작의욕 고취를 통해서 전체적인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추동력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다면 8월 초에 공모에 들어가구요. 이것은 대본심사이기 때문에 최대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2달 정도 공모를 거치고 블라인드 심의를 계획하고 있고요. 11월말까지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말에는 지원금 교부까지 마치는 작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2억 8,000만 원이고요. 대본이 선정되면 선정만으로 그치지 않고 시놉시스를 저희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다른 현장의 프로덕션 등이 레퍼런스로 활용할 수 있고 향후 올해의 신작과 연계될 수 있는 연착륙 준비단계를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미발표된 연극 대본 및 창작뮤지컬 대본/음악이 되겠고요. 각색/번안 작품을 제외하고요. 원형의 모티브만 사용하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전체를 재창작하거나 아예 순수창작을 하는 쪽으로 대상을 삼고자합니다.

연극, 뮤지컬 분야별로 최대 극작가 개인 그리고 뮤지컬은 음악이 있어서 작곡가까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연극이 최대 4,000만 원, 뮤지컬 5,000만 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세부 산출근거는 나와 있으니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창작에 대한 아티스트피 성격의 사례를 지급하는 것을 표방하고자 합니다. 심의기준은 작품의 예술성 중심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추진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달의 공모를 거쳐서 연도 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처음에는 골고루 나눠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다가 현장의 전문가선생님들께서 1개 작품 정도는 최우수작으로 지원하도록 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셔서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전체 심의과정에서 세부적인 부분들은 최우수작품을 선정할 의미가 없다거나 하는 변수가 생기면 산출내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억 8,000만 원의 잔여예산에 대한 대본공모 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안전번호 제757호 공연예술창작산실 잔여예산 활용 연극 및 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사업 추진계획(안)을 보고 받으셨습니다.

본 안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주 위원

- 심의기준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세부사항에 보면 ‘각색/번안’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창작을 하려면 2개의 분류가 있어요. 외국의 작품을 창작한다거나, 한국적 작품, 순수뮤지컬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채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순수 한국적 뮤지컬인지 라이선스로 외국의 작품을 창작하는 것인지, 어떤 것을 하시는 건가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소재는 외국, 한국 모두 가능합니다만 이미 있는 작품의 시놉시스라든지가 인용되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모티브 정도만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사업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순수창작 쪽만 지원하는 게 맞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최창주 위원

- 예, 그렇게 유도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희경 위원

- 지금 연극과 창작뮤지컬 등 두 트랙으로 하시는데, 연극대본은 그냥 극작으로도 쓰실 것 같은데요. 창작뮤지컬 같은 경우 음악까지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보통 프로덕션이 결정되지 않은 채로 쓰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제안하는 사업인데 과연 현장에서 얼마나 올 것인지가 걱정됩니다. 그런 현장조사를 해 봤는지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평가과정에서 예산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최대 5,000만 원까지 줄 수가 있는데 창작오페라의 경우 최대치가 1,000만 원인데 비하여 이것은 상당히 많다는 말입니다. 5,000만 원을 둘로 나눠도 2,500만 원씩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공모를 하고 보상은 굉장히 커서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창작뮤지컬의 평가들을 기억해 보면 참신한 것이 별로 없다는 지적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제안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당초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처 실무직원의 복안은 연극도 1,500만 원 그리고 뮤지컬도 3,000만 원 이하로 해서 많이 나눠주는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위원회라면 조금 투자의 개념도 가졌으면 좋겠고, 요즘 이슈화가 되어 있는 최저임금의 예를 들더라도 2,500만 원 정도가 최저임금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액면상은 크게 보이지만 1년 동안 창작의 에너지가 투입되는 작업에 대한 보상에 비해서는 높은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는 2015년까지 했던 사례를 보면 200건 이상이 접수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신 부분들을 여쭙봤더니 표면화는 안 되어 있지만 개인 작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작업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원제도로 소화를 못 했을 뿐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렇다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내년에는 본 사업으로 추진 합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이번에 하고 나면 내년도 정시공모 때는 더 많이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한 가지만 추가를 하자면,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작업을 하는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1년 내내 투입되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비춰서 창작오페라의 경우에도, 지금은 1년차에 1,000만 원으로 끝인데 2년차에 그것을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요? 왜냐 하면 너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오페라를 쓰시는 분들은 사실 어쩌면 더 힘든 작업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내년도 공연예술창작산실 전체 사업비가 동결로 되어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기숙 위원

-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연극은 대본만 받고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뮤지컬은 대본하고 작곡비까지 5,000만 원인 것이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2명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조기숙 위원

- 그러니까 대본과 작곡가를 합쳐서 5,000만 원인데 지원금액이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작곡자들은 유명하면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책정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종관 위원장

- 연극대본은 대본만 쓰는데 4,000만 원이고 뮤지컬의 경우는 작가와 작곡가가 각기 다른 작업을 하는데 산출근거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그것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연극은 대본에 4,000만 원이고 뮤지컬의 경우 작가와 작곡가의 2인 작업인데 5,000만 원인 것에 대한 근거가 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계량적으로 연극은 한 사람이니까 3,000만 원이고 창작뮤지컬은 두 사람이니까 6,000만 원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그것을 정확히 따져서 산출근거를 낸 것은 아니고 총량제 개념으로 자문위원단께 여쭙 봤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희경 위원님 말씀대로 오페라의 경우 더 어렵고 힘든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 정도의 수준인데, 이런 경우 지원의 형평성 유지가 제대로 된 것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은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잔여예산을 사용하자는 사업인 것은 알겠지만 부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에 오페라를 5,000만 원으로 올려줄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오페라 창작산실의 예산 자체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잔여예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만,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강홍구 위원

- 제 생각에는 나 위원님 말씀대로 연극은 3,000만 원으로 하고 창작뮤지컬은 6,000만 원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2,000만 원씩 4개, 뮤지컬은 3,000만 원씩 3개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도 조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효관 사무처장

- 저희가 꼼꼼히 검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양쪽으로 1억 4,000만 원씩 나누고 거기에 숫자를 맞춘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극 대본공모와 창작뮤지컬 대본공모 사이에 얼마나 지원자수가 다를까 하는 문제도 있고요. 우수작품 하나를 선정해서 조금 더 집중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액수와 균형성 문제는 다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세부지원은 심의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니까 최고액만 조정해서 하고 실제 지원은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 합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계산을 해서 2억 8,000만 원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요소도 있었습니다.

○김선출 감사

- 잔여예산을 활용하는 부분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정도 액수라면 상금제로 하는 금액에 버금가는 액수입니다. 이 부분은 달리 생각을 해서 선정된 대본을 잘 보급한다는 것으로 출판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지속가능성 레퍼토리로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밀접한 사업 연계성을 검토해서 공연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심의 평가할 때 강조한다거나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올해의 신작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연극은 2,000만 원씩 5개 작품이라고 명시를 하면 2,000만 원을 균일하게 지원해 줘야 하는 문제가 있으니 최고액 개념으로 수정해서 의결하면 추진하시는데 문제가 없으시겠습니까?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13페이지에 지원규모 및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최대 4,000만 원과 최대 5,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극분야에 1억 4,000만 원을 배정하고 뮤지컬분야도 1억 4,000만 원을 배정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의결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는 그런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최대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어요. 4,000만 원 1개 작품과 2,000만 원 5개 작품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창작뮤지컬은 1개 작품에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불명확하다는 것이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박두현 예술확산본부장

- 위원회에서 최대 규모를 정해 주시면 심의위원회에서 그에 따른 등급을 따로 매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작품수를 이렇게 5개와 3개로 못 박으면 다르게 집행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이것도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컨대 2,000만 원 이하라고 되어 있으면, 적으면 적어지지 많아질 수는 없으니까 잔여예산이 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작품수도 제가 보기에 6개 이하라든지 몇 개 이하의 형식으로 폭을 넓혀야 예산의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니다. 상한액수 등도 지금 조정이 가능하고 편차를 둔다면 그 액수의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의결을 해야 하니까 그에 대한 대안을 내 주시죠.

#### ○최창주 위원

- 잔여예산을 활용하더라도 단순예술과 종합예술의 차이점에 대한 구별을 잘해서 산출근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뮤지컬을 할 때 감사원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직접 느꼈어요. 그때 당시에는 200자 원고지로 1장에 얼마를 주는지를 따졌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앞으로 이런 것을 지원하려면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장르별 예산 배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먼저 여쭙보고 싶습니다. 자문회의를 하기 전에는 뮤지컬에서 거의 2억 5,000만 원 가까이 잔여예산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뮤지컬을 처음에는 1억 8,000만 원 정도, 그리고 연극을 1억 정도로 안을 짰습니다만, 지금 올라온 것은 균형배분입니다. 1억 4,000만 원을 똑같이 할 것이 아니라 연극에 더 줄 수도 있고요. 전체 장르별 파이를 세팅해 두고 그 안에서 최대금액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종관 위원장

- 부장님, 전문가 의견을 들었는데 위원회에서는 웬만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장르의 적정성으로 배분이 된 것이면 위원회가 그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위원회는 지금 있는 내용 속에서 생겨나는 공고 직전의 문제를 검토하면 될 것 같거든요. 거의 결론 단계에 와 있으니까, 작품수를 6개 작품이하로 하고 최대 4,000만 원 혹은 창작뮤지컬 대본공모의 경우에도 4개 작품이하로 하고 최대 5,000만 원으로, 적정한 액수지원은 심의위원들에게 맡기는 형식으로 공고를 하면 어떻겠어요?

####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그게 보편적으로 쓰는 방법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이 논의를 처음으로 완전히 되돌리면 자문 받은 내용까지도 위원회가 함부로 흔드는 모양새니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게 싶습니다.

#### ○강홍구 위원

- 제 생각에는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배분의 기계적 형평성을 자문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연극 대본과 창작뮤지컬 대본, 기타 등등을 생각해 보면 뭔가 어색해요. 제 생각에는 연극보다는 창작뮤지컬 쪽에 예산 배분이 조금 더 되어야 다른 형평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자면, 강홍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까지 포함해도 지금 있는 안이면 될 것 같습니다. 최대 액수를 정하고 그 안에서 심의위원들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작품수를 적절히 조정하고요. 창작뮤지컬의 경우에도 크기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서 심의를 진행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면 정리를 할까 합니다.

○나종영 위원

- 3,000만 원과 6,000만 원으로 하면 1억 4,000씩 소화가 되나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그 안에서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종영 위원

- 내가 보니까 그 돈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무리해서 넣으니까 형평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1명은 4,000만 원을 받는데 다른 것은 2,500만 원밖에 못 받느냐는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저는 그것도 많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전효관 사무처장

- 1등을 뽑아서 상금으로 4,000만 원을 준다는 개념은 아니니까요. 산출근거는 1억 4,000만 원 안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해서 결정하는 형식으로 하고요.

○나종영 위원

- 그러면 작품 수는 어떻게 해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최우수작품 1개 정도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주자는 것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최고 얼마까지 줄 수가 있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최대 4,000만 원과 5,000만 원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해서 상한액을 제한하게 되면 잔여예산이 또 남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드리려고 작품수를 조금 늘리면 해결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그 안에서 일률적으로 최우수작품을 제외한 작품에 대해서 2,000만 원씩 골고루 배분을 하다보면 계수조정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심사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예산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렇게 되려면 최대지원금을 지금보다 올려야 가능하죠? 지금 나온 의견들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원안대로 유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묻는 겁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사업예산에서 마지막에 나온 부분이 공고에 들어가는 안입니다. 최대금액만 정해주면 심사위원회 안에서 최대금액은 최우수작품에게 적용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배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14쪽의 사업예산의 예시를 수정해서, 탄력적으로 지원결정을 해서 최대 5,0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집행하면 되겠다는 말씀이죠?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3,000만 원과 6,000만 원으로 가도 됩니다. 최대 금액만 결정되면 그 이후의 부분들은 심사위원회 안에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뮤지컬이 연극대본처럼 1:1로 작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3,000만 원과 6,000만 원도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게 큰 문제가 없다면 이 상한액을 두고 세세한 것은 열어놓고 심사위원들한테 맞기는 방식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윤주 위원

-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공모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퀄리티의 작품들이 몇 편이 들어올 지에 따라서 심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것은 심의위원들한테 말기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연극에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창작뮤지컬 대본을 쓰는 게 연극뮤지컬 대본을 쓰는 것보다 어렵다는 주장을 누군가 한다면 그것에 대해 100% 동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것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양쪽에 1억 4,000만 원을 주고 그 이후에 관련된 것은 내용을 보면서 심의위원들이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희경 위원

- 심의위원들이 알아서 결정을 하시도록 상한액도 없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최우수작에 대해서는 최대금액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럴 수 있다는 것과 꼭 그래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정도의 여지만 공지하고 실제 그런 퀄리티가 없다고 하면 낮게 줄 수도 있고요.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다른 지원 사업에서도 최대 1억 5,0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억밖에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나온 의견을 종합해 보면 14쪽 사업예산 2억 8,000만 원을 “심의위원회 판단으로 상한액 이하로 적정선을 산출하여 지원함” 정도로 바꾸면 의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양한성 공연창작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이렇게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죠.

○강홍구 위원

- 그렇게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안의 6번 사업예산을 “심의위원회 판단으로 상한액 이하로 적정액을 지원함” 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견이 없으므로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안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박종관 위원장

- 잠깐 쉬었다가 보고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 5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박종관 위원장

-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고 사항

### ○박종관 위원장

- 보고사항 중 지원심의움부즈만 결과 보고와 보조금 위반행위 관련 감사 진행 경과보고를 먼저 보고 받자는 의견이 있어서 먼저 보고를 받을까 하는데 동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장

- 감사부장은 보고를 해 주시죠.

### ○김기용 감사부장

- 보조금 위반행위 관련 감사 진행 경과보고를 먼저 하고 지원심의움부즈만 검토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저희 감사부로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에 대한 제보가 들어와서 올해 3월부터 감사를 시작했고 오늘 수사 고발이 진행되었습니다. 관련단체는 ○와 ○입니다.

감사결과 해당 단체에서 예술위 보조사업을 지원 받은 뒤 저희 쪽에 정산한 금액이 아니라 단체에서 별도로 책정한 인건비 등을 돌려 막았습니다. 저희들은 보통 이것을 ‘인건비편취’라고 합니다. 인건비편취를 하고 그 금액을 다시 단체의 운영경비나 다른 단원의 사례비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저희 쪽에 소명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 쪽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우선 수사는 2018년부터 과거 3년치 전체를 요청했습니다. 연도별로 차이가 나지만 2개 단체에서 대략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오늘 고발이 되었고 54쪽에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고발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될 것 같고 아마 2달 정도 후에 결과 통보가 올 것 같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정된 금액은 교부 취소가 될 것 같고 그것과 관련해서 환수하라는 조치가 오면, 법상 환수명령권은 저희 쪽에 있지 않고 문화부에 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취소결정이 되고 환수명령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상 제재금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은 추후 문화부 보조금 부정수급위원회에서 결정되는데 법상으로는 최대 5배입니다. 환수금액의 5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정하는 것과 차이가 나겠지만, 3년치면 1억 정도의 환수명령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가 봤을 때 단체가 횡령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특정 단체 같은 경우에는 대표의 개인 계좌까지 다 확인을 했었거든요. 전반적으로 보면 단체의 운영경비가 부족하니까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단체가 위반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고 근본적으로 사업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단체와 ○단체의 보조금 위반행위와 관련한 감사 진행 경과보고를 받으셨는데요. 보고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고 공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재부가 올해부터 보조사업에 대해서 감독권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사립유치원 사태로 현 정부에서는 보조금 관리를 강화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해당 사업 부서에서 단순 미정산 말고 부정징후가 있으면 감사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비슷한 유형입니다. 또 하나는 문화부로 들어가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소명이 되면 감사가 끝나는데 거의 대부분 수사 또는 고발입니다. 그래서 단체들에게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홍구 위원

- 한 가지 여쭙볼게요. 과거에도 이런 환수조치를 받았던 단체의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환수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 어떤 조치가 따라오는 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예, 과거에도 제주의 ○라고 하는 곳에 감사를 하러 갔습니다. 해당 단체에서 1억 이상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이 돼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고 최종 2018년도 12월 판결금액이 6,800만 원 정도가 확정되어서 반납하는 것으로 되었고 아마 반납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을 제대로 못할 경우 국가기금법에 적용되어 국가채권으로 환수 될 때까지 추징이 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래서 반납이 안 될 경우는 계속해서 지원의 제한을 받게 되죠.

○김기용 감사부장

- 예,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법이 조금 바뀌었는데 계속 내지 못하게 되면 별도의 가산금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굉장히 강한 법입니다.

○나종영 위원

- 만약 환수가 안 되면 대표가 형을 산다는 것은 없어요?

○김기용 감사부장

- 보조금위반 위원회에 따라서 징역 2년, 5년, 10년 또는 2,000만 원, 5,000만 원, 1억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종영 위원

- 예술가들이 1,500만 원, 1,600만 원을 가지고 5배수로 환수를 한다거나 법적으로 구류 이상을 산다는 것은 참 슬픈 것이죠. 경제사범도 아니고 문화 사업을 하다가 본인이 횡령을 한 것도 아닌데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김기용 감사부장

- 맞습니다.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벌금형입니다.

○나종영 위원

- 예를 들어 우리가 환수에 대한 노력을 안 하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무조건 경찰에 고발을 하나요?

○김기용 감사부장

-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 외 또는 보조금을 잘못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명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만약 1,600만 원 정도를 목적 외로 쓰셨다면 그 중에 얼마는 소명이 되고 나머지는 소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저희가 최대한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표 개인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공금횡령이 되는 것입니다.

○김기봉 위원

- 편취행위 제보가 들어와서 조사에 착수하신 거죠?

○김기용 감사부장

- 예, 맞습니다.

○김기봉 위원

- 내부고발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인가요?

○김기용 감사부장

- 외부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인건비편취라면 인건비로 줬다가 일정한 통장으로 돌려받고 그 통장에 들어온 돈을 공연단의 경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죠?

○김기용 감사부장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런 동일한 편취에 대해 감사를 하거나 환급한 사례는 있었나요?

○김기용 감사부장

- 예, 아까 말씀드린 2017년도에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제보가 들어오면 감사를 했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런데 이것은 법적조치까지 가겠다는 것이잖아요?

○김기용 감사부장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때도 이렇게 법적조치까지 갔나요?

○김기용 감사부장

- 예, 그렇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김기용 감사부장

- 우선 2017년도 ○같은 경우 그쪽에서 소송을 걸어서 법정소송까지 갔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1억 정도 환수가 되었고 최종 법원의 판결은 6,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김기봉 위원

- 오늘 날짜로 고발 조치를 한 주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가요?

○김기용 감사부장

- 맞습니다.

○김기봉 위원

- 이미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사용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쓸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단체를 운영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관행화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고발에 들어가서 문제가 된다면 5배의 벌금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고발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적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회수 받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러면 5배가 아니잖아요?

○김기용 감사부장

- 제가 5배로 말씀드린 것은 제재부과금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행하지 않으면 또는 사안이 되게 중대한 경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목적 외로 쓰신 금액에 대해 소명이 된다면, 그게 개인의 횡령이 아닌 경우에는 감사 처분으로도 가능합니다.

○최창주 위원

- 내용을 보면 인건비편취 행위라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단체들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관공서에서도 항목별로 운영비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데요. 지금은 항목별 변경을 해서 지출해도 괜찮나요?

○김기용 감사부장

- 제가 알기로는 사업의 변경이 필요하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최창주 위원

- 내용을 보니까 외국의 남자무용수의 사례비를 책정하지 않았네요. 그러다보니 월급과 월세 등으로 사용했는데, 저도 옛날에 이런 것을 진행할 때 저희 집에 월급을 갖다가 주지 못했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고발을 하기 전에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 대표가 공금횡령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조사받게 해 줘야 합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예, 저희가 최대한 그 단체에는 소명을 하라고 했는데 일부 소명을 못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횡령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확정을 할 수 없고 경찰에서 확인을 하는 게 가장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강홍구 위원

-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보고를 접수하신 것으로 하고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심의움부즈만 검토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예, 47페이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지원심의움부즈만 체도를 통해서 안건 3개가 접수되었고, 4월 전에 조사를 하고 움부즈만 회의를 통해서 움부즈만 위원들이 검토를 하셨습니다.  
이의신청 주요내용은 크게 심의위원 구성 부적정, 평가결과 사전 유출, 부적절한 심사

평 등 3개입니다.

심의위원 구성 부적정은 지역대표예술제에 선정된 심의위원 5인 중 3인이 예술위원회 비상임위원과 관계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 사전 유출은 2018년 지역대표예술제가 별도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 결과가 최종 발표하기 전에 노출이 돼서 특정 단체가 알고 있었다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평가점수가 심의에 영향을 주지 않았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적정한 심사평입니다.

심사평에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느끼시기에 본인을 폄하하는 심사평이라는 것입니다. 비난성·추측성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옴부즈만 위원들의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입니다.

첫 번째 심사위원 선정과정에 비상임위원님들이 개입하시는 것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 장르 비상임위원께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서로 주의를 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심의총평 가이드라인, 심사총평 같은 경우 과거에도 옴부즈만 이의제기를 통해서 심사평이 너무 주관적이거나 과도하다는 의견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점은 주의 하라고 옴부즈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또 나와서 아예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낫겠다는 권고를 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심사평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 요구는 옴부즈만 위원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의하시는 게 타당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과거에는 지원사업 관련 평가를 평가위원을 위촉해서 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있는 사업수가 아니다보니까 외부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심사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갑질이나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평가용역 관리를 강화하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옴부즈만 위원들께서 나온 얘기지만 사업평가와 관련된 시스템을 개선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늘 논의를 하실 것은 두 번째의 해당 장르 위원님과 함께 주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될 것 같고, 심사평에 대한 ‘사과 및 정정보도’에 대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의결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검토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 ○김선출 감사

-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갑질 부분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감사원이나 문체부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로서는 저희 규정이나 세칙에 따라서 매듭을 짓고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감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경종이 울렸으면 좋겠고 보조금 관리가 전산시스템에 뜨기도 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부분과 관련된 단체들에 대해서 최대한 소명을 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옴부즈만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심의제도 관련된 것은 쪽 얘기가 나왔습니다. 내년도 사업 관련해서 우리 나름대로 기준이 정해질 텐

데 거기에 움부즈만의 이야기들을 경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심의제도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였으면 합니다.

심의총평 관련 부분은 제가 보더라도 올해는 특정 단체를 부각해서 자존심이 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화해서 정정 보도를 할 수는 없는지 이 부분은 위원장님한테도 질의가 되고 문체부에도 질의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매듭을 지어주셨으면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부장님과 감사님의 보고를 받으셨고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질문을 해 주시고요.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결정도 내려 주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기획조정부장

- '주의' 권고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입니까?

○김기용 감사부장

- 우선 감사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 같은 경우 '주의'는 징계는 아닙니다. 징계는 '견책' 부터 들어갑니다. 위원님들은 법적으로 등기이사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기관장을 견제하셔야 하시기 때문에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사회 안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논의를 하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사의 행위 자체가 법령에서 정한 범죄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논의하시고 그 이사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하면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만약 주의를 준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은 없다는 것인가요?

○김기용 감사부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의라는 것은 '환기' 라는 뜻입니다.

○강윤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참고로 움부즈만에 이의제기 하셨던 분들은 한 달 전에 문체부장관과도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문체부에서 저희 쪽에 이 사항을 문의해서 답변은 한 상태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 문제는 5월 간담회 때 이미 한번 의견들이 보고되고 논의가 되었던 사안이죠?

○김기용 감사부장

- 예.

○박종관 위원장

- 이제 정식으로 논의를 하는 것인데, 해당 장르의 비상임위원에게 ‘주의’를 권고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이 뭐냐고 물었는데 답변이 제대로 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두루 의견을 나누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것입니까?

○김기용 감사부장

- 우선 옴부즈만 위원님들은 이사회에서 의결하시기를 요청하셨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당 위원을 제외한 다른 비상임위원들이 “해당 비상임위원한테 ‘주의’를 줄만한 사항이다.” 라는 의결을 해 달라는 요청인 것인가요?

○김기용 감사부장

- 예, 맞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감사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한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이렇게 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사회에서는 그 권고를 받고 논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만약 대통령한테 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하면 대통령은 수용을 하거나 무슨 이유로 수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권고라는 것은 그렇게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이사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한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하겠습니다.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블랙리스트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보다 투명한 심의제도 운영을 위해서 만든 제도고 장치잖아요?

○김기용 감사부장

- 예, 맞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 장치인 옴부즈만에서 낸 의견을 저희가 받는 방식을 질문한 것이거든요. 심의제도를 개선하라거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과 및 정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주의’를 권고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꼭해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무처장이 정리한 대로 이해를 하면 되나요?

○김기용 감사부장

- 예, 그렇습니다.

○나중영 위원

- 권고인데 주의를 주라는 것으로 들리네요. 그런데 위원장도 할 수가 없고 감사도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회의 동의하에 권고를 하라는 뜻인가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조기숙 위원

- 죄송하지만 아시다시피 제 얘기라서 제가 빠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빠진 상태에서 ‘주의’로 결정을 하실지 마실지는 결정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소명의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부적절한 심사평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것이고 평가결과 사전유출에 대해서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평가업체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게 왜 나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심의위원 구성 부적정에서 심의위원 중 3인이 제가 3년 전에 회장으로 있었던 무용역사기록학회 이사라고 하는데 거기의 이사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3명이 무용역사기록학회 소속인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명이 제 직계 제자였습니다. 제가 직계 제자에 대해서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짧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직계 제자가 들어가게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잘못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직에 3명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안 나간지가 오래돼서 누가 이사인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배경을 아시고 저한테 ‘주의’ 를 주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주의가 아니라 더 큰 것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나가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소명의 기회는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정과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신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우선 위원님께서 계실 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유출은 조기숙 위원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옴부즈만 위원님들께서 권고를 하셨던 것은 당초 위원님들 모두 포함이 됩니다. 사전에 사무처와 비상임위원님들 간에 서로 협의된 방식이 있었는데, 그 방식을 일부 따르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그 결과 옴부즈만 이의제기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해를 반영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은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조기숙 위원

- 그 점은 억울합니다.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저에게 5명의 명단을 사무처에서 주면서 적격자가 없을 때는 바꾸실 수 있다는 메일을 계속 받았습시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 제가 먼저 부적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명단을 바꿔달라고 제안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점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으셔야 합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그래서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조기숙 위원

-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면 위원과 직원들을 똑 같은 비중으로 조사를 하고 똑같이 소명의 기회를 주고 같이 가야 하는데, 저는 모르는 상황에서 조사를 하고 마치 범죄자처럼 해 놓고 결정이 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너무 놀랐고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똑 같이 기회를 주셨어야죠. 제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그만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어떤 원칙이 있으면 위원들 모두가 이런 원칙을 지키자는 것을 환기하는 내용으로 결론이 나와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선출 감사

-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이 취임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시다보니 발생한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권고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의방식을 정했으면 거기에 충실히 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세기고 넘어가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주의’ 라는 부분을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김혁수 위원

- 몇 가지 사안 중에서 지금 나온 얘기는 지금 심사방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었던 현상이구요. 이 현상은 크게 부각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무처 안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오해를 받을 수 있고요. 내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감사님께서서는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수가 됐다는 그 표현도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갖고 제도의 한계고 나타나는 현상이죠. ‘주의’라는 단어 자체는 잘못했다는 뜻입니다. 의도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주의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떻게 ‘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논의하라고 합니까? 저는 그게 납득되지 않고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희경 위원

-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지난 5월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들으면서, 저도 그때 온지가 2~3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다.” 그것을 느낀 계기가 되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위원이 심의위원을 바꿀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심의위원이 거기에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지금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잘못했다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떠나서 지금 여기에서 권고를 하라는 것은, 특정해서 교체했기 때문에 누가 들어간 것인지를 알고 계신 게 문제가 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체할 수 있고 그 중에 순위를 정하면 누가 들어갔는지는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아요. 저희는 선정된 결과를 보고나서 압니다.

○조기숙 위원

- 저도 몰라요. 단 적격자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한 것뿐이지 누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심의위원회 순위를 정한 사람은 누가 심의위원이 되었는지를 모르는 게 당연한 상식이거든요.

○이희경 위원

-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본인이 그것을 바꾼 게 아니라 사무처에서 먼저 전화를 해서 특정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어떤 분을 얘기하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기숙 위원

- 심사위원 5명을 정해서 순위를 정해달라고 하면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교체 하셔도 됩니다.” 라고 이메일이 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면서 교체가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교체해 달라고 했고 그 교체한 사람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나중에 심사결과를 보고 알았습니다. 누가 들어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희경 위원

- 그런데 통화를 했다는 얘기는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였나요?

○조기숙 위원

- 주로 급하게 요청이 와요. 그래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통화를 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제가 이메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기용 감사부장

- 조기숙 위원님께서 메일로 사람을 바꾸라고 지정하셨습니다.

○조기숙 위원

- 제가 그쪽에서 안내를 한 바가 없는데 “무조건 바꿔라.” 이렇게 했냐고요?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꾼 것입니다.

○이희경 위원

- 그러니까 바꿀 수 있다고 얘기할 때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풀에서 사람을 바꿀 수는 있어요. 순서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특정 심사에 그 사람이 된다 안 된다는 것은 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조기숙 위원

- 그러니까 5명 안에서 바꾼 거라고요. 심사위원을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요.

○김기봉 위원

- 이번 경우가 좀 특수했습니다. 보통 추천위원을 올리면 저희 위원들이 하는 것은 우선 순위를 정해서 보내는 게 저희들의 역할인데 이때는 책임자가 없으면 추천을 해 달라고 하면서 명단풀을 보내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경우는 참 특이하다.” 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희경 위원

-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풀을 보내고 그 안에서 5명을 사무처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풀을 보면서 그 풀 안에서 5명의 순서를 정해서 보내는 겁니다. 거기까지도 심사에는 누가 들어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결정은 전화를 해 보고 사무처에서 되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조기숙 위원

- 위원님, 지금 문제는 부서마다 요청하는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어디는 심의위원 풀을 보고 5명, 3명을 직접 선정하시라고 하고, 어느 경우는 5명을 주고 번호만 정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는 5명 중에서 적격자가 없으면 바꾸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온다고요. 그래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저는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심의위원에 누가 들어갔는지는 모르죠. 5명 중에서, 그 심의위원 풀에서 적격자가 없을 때는 바꾸라고 했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조기숙 위원

- 그러니까 저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왔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라고 봅니다.

○나종영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의’의 개념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감사님이 ‘주의’ 보다는 우리 위원회가 성찰 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고 어떻게 합의를 볼 것인지 그 논의를 하는 게 진행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감사님이 위원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심의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 기회를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창주 위원

- 김기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위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리면 사무국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비상임위원을 ‘주의’ 권고하는 이유가 뭘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절차를 따랐는데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합니까?

○강윤주 위원

- 지금 말씀을 들을수록 오리무중인데요.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8쪽에 있는 제도개선 권고에 대한 것에 포커스를 두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부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조기숙 위원님이 소명하신 내용은 뭔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는 진실을 밝히는 법정도 아니고 계속 토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기숙 위원님이 많이 억울하실 수도 있고 감사를 하신 쪽도 억울하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두 분이 서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계속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제도개선 권고에 쓰여 있는 “장르별 비상임위원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밖에 없다.” 라는 문구, 그리고 밑에 보면 “예술장르 기반의 비상임위원이 심의위원 선정까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임.” 이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인지, 아니면 이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풀 안에서 누군가를 선정해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심의위원으로 해라.” 라고 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씀하신 것인지 여쭙보겠습니다.

○김기용 감사부장

- 말씀하신 것 중에 전자입니다.

○강윤주 위원

- 그러니까 기존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죠?

○김기용 감사부장

- 옴부즈만 위원이 올해로 3년째입니다. 현재 위원회의 지원심의제도가 타 기관을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상임위원님들이 장르별 위원님이시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위원회의 출범취지와 지원심의제도가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강윤주 위원

-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저도 문화일반의 위원으로서 선정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분들의 전문성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그 분들을 선정하는데 전문성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기숙 위원님한테 동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저는 결국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모르니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사람은 전문성이 있어.” 라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선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조기숙 위원님을 변호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상황이었다고 생각한다면, ○씨라는 분이 아마도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추천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지금 옴부즈만에서 제도개선 권고를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훨씬 더 핵심적인 사안인데요. 이것은 한번 논의를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위원회의 구조적인 제도에 평

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논의할 것인가에 대해 풀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절차적으로 옴부즈만이 권고를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처리 결과를 그쪽에 회신해야 할 기한이 있나요?

○김기용 감사부장

- 기한은 아니고 옴부즈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이의제기를 하신 분들께도 필요하면 저희가 답변을 드립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예를 들어 저희들이 개도개선 등 총체적인 검토를 해서 그런 결과를 다음에 회신 드려도 되는 것이지요?

○김기용 감사부장

- 그렇습니다.

○강윤주 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이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3년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나와 있는 5인이 위원이신가요?

○김기용 감사부장

- 예, 그렇습니다.

○강윤주 위원

- 모두 남자분들이신가요?

○김선출 감사

- 예, 그렇습니다.

○강윤주 위원

- 옴부즈만 심의제도라는 것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을 해 주는 곳인데 모두 남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성평등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박종관 위원장

- 심의제도의 공정성을 확대해서 확보하기 위한 대안제도니까요. 강 위원님 말씀도 유효한 지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짚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심의위원선정방식부터 심의제도 개선은 이 문제가 꼭 아니더라도 지금 심의제도를 개선하고 개편하기 위한 T/F도 구성되어 있고요. 결과를 지난 위원회 때 급하게 논의해서 이번 정기공모와 내년도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심의에 적용을 해 보자고 의결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확인할 부분이, 장르별로 모두 다른 심의위원 선정방식을 갖고 있나요?

○이희경 위원

-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종영 위원

- 전달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죠.

○박종관 위원장

- 문화일반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시니까 어쨌든 합의제의 모양새를 유지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될 텐데 장르별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우리 위원회는 1인 대표 체제니까 문화일반 쪽의 영역과 예술장르 쪽이 상이한 부분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강홍구 위원

-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저희가 추천하고 최종 선정을 해서 누가되었는지를 제일 마지막에 알게 되는 시스템이 일관적으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굉장히 일관되고 모든 자료들도 똑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옴부즈만이 자꾸 지적하는 것은 그 내용이잖아요? 조기숙 위원께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람을 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적한 것은 그 사람이 됐든 안 됐든 오해를 살 소지는 있고 그렇게는 안 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제도와 큰 관계는 없어요. 제 생각에도 조기숙 위원님이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걱정된 전문가로 추천을 했는데 왜 문제가 되냐?” 그것은 사무처의 실수도 있어요. 사무처에서 그렇게 “개인추천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죠.

○김기봉 위원

- 지난번에 문제 제기가 되었을 때 위원들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추천만 하고 배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을 한 부분은 실수를 하신 것 같다.”, “실수하신 것 같으니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선에서 끝날 수 있는 문제인데요. 저는 해당 장르의 비상임위원 ‘주의’ 권고보다는 이와 같은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어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전체가 성찰하는 계기로 삼고 예상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추천하지 맙시다.” 라는 근거가 나온다고 하면 그 정도를 합의하는 선에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1번 제도개선하고 5번 제도개선은 이미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옴부즈만이 지적하기 전에 우리도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적했고 위원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정리를 하자면 지원의 투명성을 위해서 6기 위원 전체가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그 입장을 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의’ 권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리를 하자면, 옴부즈만도 저희가 설치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존중을 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옴부즈만의 ‘주의’ 권고를 수용하여 위원회는 높은 책임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원칙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오해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맥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서 성안을 하면 어떤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비상임위원들이 장르의 대표로 선임되신 것은 그만큼의 권한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상응하는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위원회가 논의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과 위원 개개인의 성찰을 하는 것으로 권고를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박종관 위원장

- 문체 제기를 한 단체에도 알려줘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비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김기봉 위원

- 해당 장르의 비상임위원이 아니라 6기 위원회가 ‘주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6기 위원회는 옴부즈만의 지적을 받아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힙니다. 높은 수준의 지원 투명성을 위해 우리가 확인해야 할 원칙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를 수용하여 지원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감사님의 의견을 주시죠. 이 3개 문장 정도로 6기 위원회 전체가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선출 감사

- 예, 아주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희경 위원

- 문장을 지금 만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시겠어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맥락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장이 대응해서 하겠습니다.

○김기봉 위원

- 어찌됐든 간에 문제를 지적한 단체가 있으니, 우리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되돌아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해당 장르의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6기 위원 전체는 심의위원 선정과정에서 조금 더 주의를 하겠다는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 예,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충분한 ‘주의’ 권고의 의미를 받는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동의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희경 위원

- 네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박종관 위원장

- 네 번째는 지금 확인한 바와 같이 저희한테 권한이 있는 것이지요?

○김기봉 위원

- 이것은 표현의 문제 같고요. 그러면 또 심의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나종영 위원

-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심의위원을 간섭하는 겁니다. 우리가 “심사평을 어떻게 써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저희가 이미 심사총평 작성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는데 심사평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선출 감사

- 51페이지 심사평에 “예술적인 변화나 향상을 위한 노력이 공공연하게 낮게 평가받는 행사도 탈락시켰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은 취소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각심 차원에서 제외를 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단체 맞죠?

○김기용 감사부장

- 예, 맞습니다.

○김선출 감사

- 자기들을 특정해서 이렇게 심한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예,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도 심의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쓴 것에 대해서 위원회가 다시 쓰라고 한다거나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김선출 감사

- 정정보도라는 것이, 심사평이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있는데 그것을 바꿔달라는 것 같습니다.

○강홍구 위원

-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심사평을 저희가 정정하라고 요구하고 실제로 그것을 정정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특정단체에 대한 심사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에서 끝내야죠.

○박종관 위원장

- 강 위원님, 그런데 심의총평 작성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심사평이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꿀 방법이 없는 것은 별도의 문제지만요. 개선하겠다고 한 것은 이미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김기봉 위원

- 그러니까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의총평 작성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겠지만 이미 심의평을 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정하라고 하는 것은 심의위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개입하는 문제잖아요.

○박종관 위원장

- 개입의 문제가 아니라 확대해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강윤주 위원

- 저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심의위원들을 선정한 것은 위원회잖아요. 그리고 그 심의위원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경우에는 그 분들한테 권고해서 뭔가 수정을 해야 할 측면도 있고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보

거든요. 위원회가 심의위원들한테 위촉해서 맡긴 일인데, “욕을 썼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은 아니죠.

○박종관 위원장

- 보통 귀책사유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위원회는 귀책사유를 갖고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김혁수 위원

- 위원장님, 그런데 소신 있게 심사평을 쓴 것을 가지고 “다시 써라.” 이것은 오히려 더 아니라고 보는데요.

○강홍구 위원

- 저도 심사평을 고치거나 다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사위원의 권위도 있고요. 저희가 일을 맡겼으면 심의위원들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와서 심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정도로 끝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렇게 하세요. 이의제기를 한다고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전문가인데요.

○박종관 위원장

- 해당 단체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데, 옴부즈만이 권고를 하니까 달라지는 것인데요.

○강홍구 위원

- 옴부즈만이 권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고쳐줘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그렇지 않아요.

○강홍구 위원

- 단체가 얘기를 하고 옴부즈만 자기들은 관여할 얘기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위원회에서 논의한 대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정협회 관련자가 평가결과 발표 전에 어떻게 개인 SNS에 결과를 게시할 수가 있죠?

○김기용 감사부장

- 그것은 ○라는 분이 한국무용협회의 직위를 갖고 계신 분인데, 평가용역 쪽이 무용 쪽이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마지막 평가결과 회의를 하는 날이 있었는데 10명이 다 오

셨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조정하고 등급을 확정하는 회의를 했었는데 그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데 한 달이 걸린 것 같습니다. 그날 오셨던 무용 관련된 분들이 밖에 나가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 분의 주장은, 한국무용 쪽의 것을 취합해 보니 이런 평가가 나왔다고 추정을 해서 본인 SNS에 올렸다는 것입니다.

○ 전효관 사무처장

- 그러면 다른 것이네요.

○ 김기용 감사부장

-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페이스북에 있는 내용을 봤습니다. 보통 그런 개연성에서 올린다면 “추정된다.” 또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분은 아주 명확하게 특성 사업을 적고 ‘우수’ 등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유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하거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이 보고사항은 이 정도로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보고사항이 13개이지만 소위원회 활동 보고 6개를 제외하고 지금 2개의 중요한 보고사항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 심의 결과 보고를 간단하게 받겠습니다.

○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1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연수단원 정규직 고용전환 장려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지원사업의 연계성 사업으로써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선정되어서 인턴십으로 재직하던 중 2019년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 접수 받고 ‘가’, ‘부’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6개월간 월 보수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정규직 전환사실 확인(적격심의)으로 선정을 하고요. 자세한 심의기준은 다음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지원규모는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약 19일간 NCAS를 통해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접수현황은 총 32개 단체, 36명에 대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고요. 접수를 받은 총액 규모는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결과입니다.  
2019년 7월 16일에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17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인의 심의위원을 모시고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사업의 심의기준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노무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심의기준의 두 번째를 보시면 ‘근로계약의 양호성’ 그 가운데에서 \* 표시가 되어 있는 정부 권고 표준근로계약 준수 여부 등을 노무사를 통해서 최종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밑의 심의결과 박스를 보시면 총 32개 단체, 36명이 신청한 가운데 계약서상 정규직으로 확정되어 있는 경우 15개 단체가 선정되었구요. 그 다음에 조건부, 조건부라고 함은 우리나라 문화예술단체들이 고용계약서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경우 법령 등을 많이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저희 노무전문가들이 각각의 고용계획서를 보고 수정계약을 해서 조건부 형태로 16개 단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총 지원결정액은 1억 7,185만 원정도가 조건부 형태를 포함해서 선정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선정 단체 후속 조치 계획입니다.

조건부 선정 통지 후 1주 이내에 저희가 노무사를 통해서 받은 수정·보완한 내용들을 지금 현재 고지를 하고 있고 각 단체에서 그 내용들을 수정한 계약서를 보내왔을 때 다시 한번 최종 검토를 통해서 최종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보완서류 검토가 7월 31일까지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최종 선정결과 발표는 8월 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심의결정 세부내역은 18쪽과 19쪽에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셨는데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김혁수 위원

- 7번의 ○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선정단체에 ○가 있는데요.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이 부분은 체크를 못 했는데요. 현재 조건부로 선정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집행지침에 따라서 만약에 부적격 판단이 난다고 하면 집행할 수 없다는 것을 발표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접수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감사합니다.

○박종관 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 주관처 지원심의 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 ○홍승욱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장

- 2019년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네트워킹 프로그램 운영 주관처 지원심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이미 위원님들께서 계획과 심의결과를 통해서 의결한 한국예술창작아카데미 사업에 대한 추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수용비를 통해서 저희 예술위원회 사무처에서 직접 운영을 했던 사업들이데요. 저희가 블랙리스트 이후에 일반수용비에 대한 징벌적 예산 삭감 때문에 민간경상보조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여건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49명 그러니까 차세대예술가들이 단순히 1년 동안 최종 결과발표, 공연을 만들거나 작품을 발표하는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동세대의 예술가들이 같이 프로그램을..... 어떤 문제의식이나 창작소재를 발굴하는 프로그램들을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주관처를 공모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 신청접수를 받아서 접수결과 총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 신청액이 3억 1,400만 원 정도고요. 예산배정액은 8,000만 원인데 4분의 1로 나누면 대략 8,000만 원 이내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류와 인터뷰/PT 통합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17일 심의를 거쳤고 지원 대상 총 1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지원결정액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 등은 지금 현재 심의위원 구성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를 보시면 지원결정현황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현황으로는 4건 중에 1건이 선정되었고요. ‘프럼에이’ 라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프럼에이’ 라는 단체는 올해 DMZ에서 평화축제 등을 같이 개최했던 단체이고요. 여러 가지 심의의 결과를 통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34쪽을 보시겠습니다.

각각의 신청단체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현재 평가결과 점수 순서입니다.

그래서 만약 ‘프럼에이’가 최종적으로 지원을 포기할 경우에는 예비지원 대상자로서 ‘구보댄스컴퍼니’가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보고를 드리고 7월 29일 정도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는 공연예술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준비포럼 발제 내용 보고인데요. 이 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집 책자를 주셨는데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환 공연예술본부장

-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한 것이라서요. 다만 이희경 위원님이 보고 하실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이것은 그냥 문건으로 보고를 받으시죠.

○이희경 위원

- 예.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극장 및 미술관 운영체계 개편을 위한 공청회 결과 보고는 송시경 본부장이 간략하게 해 주세요.

○송시경 예술공간운영본부장

-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40쪽입니다.

공청회가 7월 17일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40쪽에 있는 진행 프로그램을 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나와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크게 극장 운영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했고요. 그 운영 방향성에 맞는 운영 체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극장을 먼저하고 미술관을 하겠습니다.

41쪽 현 극장 운영에 대한 진단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테스트 베드 공간임에 공감하고 적은 예산과 정해진 인력과 공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며, 공공기관으로서 인큐베이팅 중심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고, 예술위원회와 그 소속 극장으로서 관객에 대한 이해도를 우선으로 정확한 미션과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인들을 위한 스태프가 되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하며 역할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일반 대관을 늘려 어려운 단체들을 많이 돕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러한 진단에 따라 추가할 향후 과제는, '예술가를 위한 충실한 스태프,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지향점으로 하여 예산이 적으니 예산을 증액하고, 대관 작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52시간제에 따른 대관시스템을 개선하고 교육기능 범위를 청소년 포함 일반인, 전공학생 그리고 전문인으로까지 확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학로 극장들의 대표 중심 역할을 하고 4개의 극장만 할 것이 아니라 로비, 스튜디오, 극장 앞마당, 미술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9개 극장을 움직인 적이 있는데 렌트를 해서라도 운영 극장을 추가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극장에 대한 조직체계는, 결론적으로는 그 당시에 제시했던 극장장 운영체계가 가장 합리적인데요. 나머지 4개 안 중에서 3개 안은 복잡한 예술위 조직체계 안에서 효율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술위의 간섭이 최소화되도록 독립성과 권한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와 평가도 명확히 주어져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극장장 채용 시 고려할 사항으

로는 현장과 행정을 모두 아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유인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관도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시 중심의 미술관이 되어야 하고 교육 등 전문 매개자들을 지원하는 사업까지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만, 소속기관으로서 해야 하는 사업들이 과도하면 안 되고, 소장품의 경우 관리 전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조직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기존에 제시했던 대로 관장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찬성을 했고 예술감독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공청회가 끝나고 현장소통위원회에 7월 19일에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자료 44쪽부터입니다.

현장소통위원회에서는 크게 3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극장장 및 미술관장 영입으로 결론 도출하는 과정을 모두 홈페이지에 공청회 자료 및 내용을 올려 공개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모 시에도 최대한 공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술위 조직체계 안에서 명확한 직위·직책·직무설계 요구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극장장 및 미술관장 채용 과정의 투명한 공개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종관 위원장님을 채용할 때도 현장으로부터 질의 의견을 받았고 그 내용을 나중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얘기를 했습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8월 전체회의에 의결할 수 있도록 안을 다듬고, 가능하면 조직개편에 반영해서 극장장 및 미술관장을 8월이나 9월에 전형 검토를 해서 10월 6기 위원회 임기 내에 아르크혁신(안) 23개 과제 중에 하나인 극장장 및 미술관장을 외부에서 모셔오는 안을 추진하려고 하는 공청회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전형(안)이 반드시 위원회에 보고가 되고 의결이 되어야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니까 오늘 보고는 그냥 공청회 보고로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보고는 각 소위원회 개최와 문학창작집필공간 잔여예산 활용 및 공모추진계획(안)입니다.

그 전에 이회경 위원님이 19일에 열렸던 팝업시어터 대면 사과와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을 내기로 해서 그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경 위원

- 사실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논의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써봤습니다.

읽겠습니다.

“ ‘팝업시어터’ 사태 사과와 약속의 후속조치에 대한 의견

이 글을 써야할지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구체적인 사안

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의 중심에 예술위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지 못했음도 반성합니다. 국가권력이 자행한 부당한 지시에 맞서는 것이 자신의 삶을 걸어야 하는 일이기에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일 수도 있는 구성원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건드리는 것은 아닐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 있었던 ‘팝업시어터’ 사태 공개 사과에 대한 평가와 후속조치는 위원회가 마땅히 다뤄야 할 사안이라 여겨 제 의견을 제출하며 이에 대해 토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번 공개 사과는 예술위가 피해 예술가들과 일곱 차례나 만나 의견을 조율하며 함께 만든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사과문에서도 밝혔듯이, ‘팝업시어터’ 사태의 해결 과정은 예술위원회가 블랙리스트 피해 예술가들과 예술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고, 피해 예술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관계 회복의 길’을 함께 걷기 위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순탄치는 않았습니니다. 돌발적인 현장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 여길 수도 있겠지만, 이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라는 참석자들의 얘기는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문제부의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에 대한 비판은 차치하고, 몇 차례의 준비 만남에서 당사자의 사과는 왜 이뤄지지 못했을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이미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제3자는 가늠하기 어려울 고통의 시간을 거쳤을 개인에게 너무 가혹한 요구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백서의 해당 부분을 다시 찾아 읽으며 피해자들과 연극인들의 분노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팝업시어터’ 사태는 공연이 벌어지는 현장에서 예술위 직원들이 피해 예술가들에게 직접 가한 부당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과가 조직 차원에서만 끝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 잘못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에 대한 직접 사과는 어떤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은 그 개인이 감당해야 할 무게를 함께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팝업시어터’ 사태를 포함하여 블랙리스트로 인한 예술위 구성원들의 내상을 보듬고 치유하는 일도 위원장님 이하 위원회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재발 방지 공청회를 비롯해 후속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피해 예술가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이런 행사나 제도 마련으로만 가능하리라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만나 부딪치며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게 될 때 비로소 동반자적 관계는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시기의 과오를 덮어버리거나 회피하지 말고, 예술위의 역할과 존재 이유, 예술지원 담당자와 예술가의 관계를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 박종관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당일에 사과를 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린 대로 대면 사과는 끝나는 자리가 시작이고요. 약속한 대로 이행협조추진단과의 지속적인 협의나 제도장치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장소통위원회와의 지속적인 협의 문제를 당일 날 약속드렸고요. 필요하다면 피해당사자와의 추가 프로그램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희경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회 내의 의견들을 요청하셨으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주 위원

- 예, 저도 좀 궁금했거든요. 녹화영상을 저도 봤는데 피해자들은 “해당 직원의 신분을 왜 밝히지 못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 “문체부에서는 왜 나오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에 대한 위원장님의 답변은 “죄송합니다.”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지?” 라는 궁금증이 들었는데 혹시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수 있을까요?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전효관 사무처장

- 진정성 있는 사과의 자리라는 것을 우선 합의하고, 추후 공식적인 혹은 그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후속조치를 하자는 얘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공청회도 포함 될 것일 텐데요. 저희로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소통위원회나 공청회 등 어떤 요구를 놓고 테이블을 구성해서 논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혁수 위원

-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온도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공통으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위원회 사무처의 소통방식을 지적합니다.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연극협회와 위원회가 두 달 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극협회도 “사무처가 가해자를 떠나서 그런 분위기의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싶는데 그나마 변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연극인들을 데리고 장난하는 거냐?” 오히려 온건파들까지 격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희경 위원님은 가해자가 나오라는 겁니까?

○이희경 위원

- 가해자가 나가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 나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팝업시어터는 실질적인 대면으로 부딪친 상처가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수 위원

- 가해들이 잘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사과는 조직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 위원장님도 블랙리스트 피해자고 나종영 위원님과 저도 피해자입니다만, 조직에서 사과를 하면 조직을 믿고 가는 겁니다. 연극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러면 위원회 직원들 중에서만 가해자가 나올 텐데, 그러면 문광부도 나오고 그 위쪽도 다 나오라고 할 건가요? 그것은 해결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나온다면 고맙죠. 그러나 이미 그분들은 다 처벌을 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다시 나와서 피해자들한테 사과를 하라고 한다면, 퇴직하고 징계를 받은 직원들한테 나와서 사과를 하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연극계에서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소통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면 어떻게 연극계와의 갈등을 해결하실 건가요?

○이희경 위원

- 저는 연극계의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쓴 이유는 그날 그 자리에서 있었던 것을 본 제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요. 이것은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는 시스템의 문제

가 아니라 백서를 읽어보면 팝업시어터는 현장의 상황이 있어요. 가해자 본인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한다면 부딪혀서 사과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혁수 위원

- 그 당시 “이렇게 해서 다 해결이 될 것이냐?” 그랬더니 송시경 본부장이 “몇 번이나 합의가 된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사과를 요구할 텐데 그때마다 계속 사과를 할 것이냐는 얘기까지 나왔죠? 지금은 가해자들보고 모두 책임지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연극계에서는 위원회를 바라보며 위원회 조직을 믿고 얘기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가해자를 꼬집어내라.” 라는 일부 목소리가 전부 연극계의 얘기처럼 보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박종관 위원장

- 이미 말씀 드린 바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원칙이 있어요. 진정한 사과란 당사자가 받아들일 때까지 하는 것임을 이미 지난 위원회 때 확인했고, 이번 팝업시어터 사과에 임하는 원칙이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독일식 사과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거든요. 피상적 독일적 사과가 아닌 실제 독일식 사과를 통해서만 새로운 신뢰회복의 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이회경 위원님 지적도 함께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제안을 좀 드리면, 8월 위원회 이전까지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만들고 팝업시어터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들 내부에서도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면 차기 위원회 때 조금 일찍 모여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해 보는 것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받아들여 주신다면 그렇게 일정을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회경 위원

- 간담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요. 그날 제가 사무처장님이 현장에서 요청이 오면 그것에 대해 테이블을 가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쪽의 요구는 계속 “이것을 해 달라.” 가 아니라 “대체 위원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 것인가?” 저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받아들였거든요. 아마 김혁수 위원님이 얘기하는 태도 문제가 그런 것과 연결될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런 안이 내부에서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박종관 위원장

-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날 수세적인 방식으로는 진정성도 손상된다는 느낌도 받았습시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방법론을 찾지 않고는 신뢰회복의 길은 정말 멀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일정이 안 되면 8월 30일 이전에 모여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김혁수 위원

- 위원장님, 말씀하신 건 다 좋은데 지금 얘기는 전부 다 가해자한테만 몰려있거든요. 가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님이 될 해도 그날 얘기는 결국 그것이잖아요? 지금 페이퍼에 가해자 얘기가 나오니까드리는 말씀입니다. “가해자가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냐?” 이게 결국 주제가 되어 버린 것이잖아요?

○이희경 위원

- 김혁수 위원님이 연극계를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혁수 위원

- 일단 이것도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퇴직하신 직원들에게 “나와주세요.” 라고 할 겁니까?

○이희경 위원

- 아니요. 지금 이 안에 계신분이에요.

○김혁수 위원

-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가해자가 그날 나와서 사과를 해 달라는 건가요?

○이희경 위원

- 그것은 그 분이 동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설득을 해 보자는 것이죠.

○김혁수 위원

- 왜 그분들한테만 설득을 해야 하는 건가요?

○김선출 감사

-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서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강윤주 위원

- 인간 대 인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첨언을 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자리를 가지고 심각하게 논의를 해 보자는 의견에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저는 이희경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위원회 직원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조직이 나를 보호해 주었나?” 하는 질문들을 다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았다는 배신감 때문에 정신상담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가해자를 갑자기 벌거벗겨서 대중 앞에 내놓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사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가해자에게도 사과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위 쪽에서요.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일이니만큼, 또 그것을 책임지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이니만큼 모여서 논의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홍구 위원

- 저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조직 내에 있는 가해자가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개인적으로 사과를 할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이희경 위원

- 예, 그런 것 같아요.

○강홍구 위원

- 개인적인 사과를 받고 싶다는 분들의 그 의도는 알겠는데요. 저도 김혁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태는 개인 대 개인의 사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사과를 받음으로써 해결될 문제면 좋겠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본질적인 문제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 대 개인의 사과로 끝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개인 대 개인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분하고 상의를 해서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쭙볼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예 일찍 모여서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박종관 위원장

-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게 동영상으로 녹화되어 있어서 언제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차기 회의에 1시간 정도 미리 모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차기 회의부터 먼저 정하겠습니다.

(차기 회의 및 간담회 일정 조정)

○나종영 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이나 사무처에서 안을 좀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새롭게 시작하면 시간도 많이 들고 갑론을박으로 끝나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사무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효관 사무처장

- 저희가 안을 만들고 그 안에 대해서 토론하는 형식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데이터나 정보 등은 정리를 해 보고, 혹시 현장에서의 요구도 있으면 그런 것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저는 이희경 위원님의 의견이 “수세적으로 하지 말고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사과를 할

때 사과의 맥락이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를 든 것이고 각종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진지하게 마음을 열고 위원장인 저로서도 논의를 한 바가 없으니까 그것을 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월 30일 회의 때 미리 모여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최창주 위원

- 저희가 미리 회의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서 “가해자들 나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잘 하셨어요. “개인의 인격인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일단 위원장님께서 그 직원을 만나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박종관 위원장

- 예.

○최창주 위원

- 저도 그 당시에 참석을 했지만 원로연극배우들은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이냐?” 일단 조직의 장이 90도 각도로 사과를 했는데도 전혀 관계없이 생각을 하는데요. 상처 받지 않게 직원을 만나 보고요.

○박종관 위원장

- 필요하면 제가 만나겠습니다.

○최창주 위원

- 그분들은 개인 가해자가 나오라고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만나보시고 회의를 하시죠.

○박종관 위원장

- 예, 이렇게 하고 이희경 위원님 의견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보고는 어떻게 할까요?

○이희경 위원

- 그것은 서면으로 대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그러면 마지막 보고안건을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문학창작집필공간 잔여예산 활용계획 및 공모추진 계획(안)입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66페이지입니다. 지금 별지로 나눠드린 체육기금사업의 2019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최대한 짧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학창작집필공간사업은 정기공모 때 진행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정한 5개 단체 중에 1개 단체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잔여예산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이 2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불용을 시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하는 사업이고요. 운영하는 공간이 국내에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규모 자체의 예산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운영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어서 5,6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전에 했던 방식과 동일합니다. 다시 재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결안건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5,600만 원을 재공모를 진행하고 심의결과를 다시 의결안건으로 올려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정대훈 문학지원부장

- 다음은 체육기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체육기금으로 운영됩니다.

도서관에 작가들을 채용해서 200만 원씩 최대 8개월간 문학큐레이터로 업무를 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것은 1단계로 도서관을 선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33개 도서관을 선정하기로 했었는데요. 자료에 보시면 신청한 도서관이 41곳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체육기금사업이다보니까 사업이 결정되고 저희 쪽으로 교부되고 진행되는 과정이 연도를 걸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공도서관들은 이 사업을 수행하는 게 여의치가 않아서 이 사업을 통해 뭔가를 하려는 의지가 강한 도서관들이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31곳이 선정되었고요. 저희가 3개를 예비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 상황으로 보면 예비로 선정된 도서관까지 다 지원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혹시라도 잔여예산이 발생되면 이것을 다시 공모를 해서 진행하기는 시간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다음에는 또 작가들도 채용을 해야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선정된 도서관들을 모두 지원하고도 잔여예산이 남게 되면 기획발굴을 통해서 도서관을 전략적으로 선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고민해 보고요. 그것은 추후에 성안이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감사합니다.

보고를 받으셨는데 접수를 할까요?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장

- 6기 위원회 임기를 3개월 남짓 남겨놓고 있는 시기인데요. 팝업시어터 사태와 블랙리스트 사태를 넘어서는 신뢰회복 프로세스 등 높은 수준의 대안설계 등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효관 사무처장

- 보고가 하나 남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초안입니다.

○김기봉 위원

- 지난번 회의 때 이것은 보고사항으로 하지 말고 토론사항으로 하자고 했는데요.

○박종관 위원장

- 토론사항으로 올리기로 했는데 8월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기초(안) 이라도 보고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오늘 논의한 ombudsman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짧게 보고를 받죠.

○정창호 공정심의부장

- 예,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2020년 지원심의제도개선 검토계획(안) 보고입니다.

사실 저희가 보고를 드릴 내용은 저희 내부적으로 지원심의제도 T/F를 만들어서 2020년 공모시기에 맞춰 일정을 이끌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앞부분의 내용은 팩트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어쨌든 지원심의제도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정성을 강조하는데요. 심의제도의 과정으로 인해서 크게 3단계로 나누고 각각의 주요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요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를 박스로 해서 넣었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도에 대한 공과분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에 실시한 공정심의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공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비해서 전반적인 공정성이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응답자들을 중심으로 세부내용을 제시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불공정한 부분이 많은지에 대해서 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를 봤을 때 현 제도의 특징은 절차적 공정성 중심의 제도설계로써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장점도 있지만 한계도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향후 제도개선을 하는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무처가 전체적으로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 전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4가지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심의제도 운영 관련해서 예술위원회 위원회 적정한 역할과 권한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심의 위원제도를 도입하든 어떤 제도를 도입하든 가치 부분의 차이로 인해서 제도의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선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격 중심의 소극적 판단이냐? 아니면 적극적으로 판단해서 풀에 들어간 후보

이름까지 편차를 줄일 것이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참여성과 전문성 부분의 가치 충돌인데요. 현재 제도 자체는 절차적 정당성 부분을 중심으로 설계된 정책결정이기 때문에 저희 제도 내에서 참여성 부분과 개방성 부분과 더불어 전문성을 함께 기대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제도를 운영해서 하나의 확실적인 제도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심의제도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는 관점에서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6페이지는 저희 사업의 체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선택과 집중, 다양성의 기회확대. 다른 말로 하면 소액다건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각각의 사업별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 저희가 어느 부분을 취하고 있는냐? 저희 위원회는 어떤 사업을 주로 취하고 있는냐에 대한 위원회의 스탠스를 보면, 아래쪽의 제도 부분이 약간 절충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중지원총량제' 라는 제도가 있고요. 동일사업지원제한도 있고 중복지원제한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취지에 맞게 과감하게 풀 것은 풀고 집중할 것은 집중을 하고요. 아예 소액다건으로 갈 부분이라면 다양성 등 사업목적을 정해서 그런 색깔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주 쟁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는 개선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T/F가 18일에 발족되는데요. 몇 가지 제도를 모아봤습니다.

크게 5가지 동그라미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별로 이런 제도를 적용하는 게 적절한지를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의 내용은 지원심의제도 T/F인데요. 7월 18일 날 내부적으로 인사명령이 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8명으로 되어 있고요. 각각 이 전의 담당업무를 고려해서 젊은 직원들 중심으로 저희가 T/F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요 활동을 보시면 중간 내용은 서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기한 내에 실무(안)을 만들고 의견수렴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을 고려해서 내부직원 T/F 중심으로 인사명령이 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핵심은 저희가 계속 자문회의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안이 정리되면, 물론 그 과정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수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9월 초에 현장토론회를 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 직원과 위원님들 간에 워크숍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주요 쟁점에 대해서 분명히 사업부서의 직원들과 위원님들 간의 간격을 줄이고 맞춰야 어떤 제도가 나오더라도 오늘 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9월 30일 사업설명회를 할 때 지원심의제도를 조금 더 과감하고 현실적으로 운영해 보겠다고 발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 박종관 위원장

- 오늘 부장이 설명한 핵심은 지원제도 개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 작업을 이렇게 전개하

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현장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치를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오늘 보고내용의 핵심을 알고 보고를 접수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십시오.

○강홍구 위원

- 없습니다.

○김기봉 위원

- 지원심의제도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전면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위원회 회의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으로 올라오는데, 이것은 토론안건으로 올려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자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받아보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것은 자료가 없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봤어요. 저희 6기 위원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 부분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T/F를 구성하고 T/F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좀 제기하겠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제도 같은 경우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봐서 성적을 내는 것만큼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면서도 끌고 갑니다. 저희가 공모하고 심의를 하고 결과를 발표하는 방식도 지금까지 진행을 했던 방식인데요.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것들 자체, 즉 공모라고 하는 방식 외에는 없는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기존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새로운 사업운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지금 나와 있는 부분들은 기존 심의 틀 안에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희경 위원

- 의견을 얘기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종관 위원장

- 답변을 드리면 되는데요.

○김기봉 위원

-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박종관 위원장

-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모 자체의 위험성에 관한 지적이 이미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안만 가지고는 논의를 하시는 게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더 진전된 안을 받아보셔야 논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기봉 위원

- 제가 정리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획단계, 사업의결단계, 사업공모단계, 사업신청과 접수단계, 사업심의선정 및 발표단계, 사업효과단계 등 저희 지원사업과 관련된 전 단계에서의 드러나는 문제점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기획단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정말로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제가 6기 위원을 하면서 많이 말씀드렸습시다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일상적으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모에 나온 용어들에 대해서 별로 문제점을 못 느끼지만, 현장 예술인들은 저희가 쓰고 있는 용어들에 대해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할 때 공모의 내용을 신청하는 분들에게 맞춰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하시는 분이 “어떤 사업을 신청하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위원회에서 사업을 의결할 때도 그냥 사무처에서 올리면 저희들은 보고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넘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의결하고자 할 때 “이 사업의 목표가 뭐냐?” 그리고 “이 사업을 해서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가 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업을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사업을 논의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서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모를 할 때도 공모일시의 적정성입니다. 현장에서 제일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기획과 공모접수시기와 의결 부분에 있어서 현장이 작업을 준비하고 시작할 시간들을 고려해 달라는 요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프로세스에 맞추지 말고 현장에 맞춰달라는 요구들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장르적 특성이라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예술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연극 쪽의 특성이 있고 시각예술 쪽의 특성이 있고 전문가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을 반영하는 공모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신청과 접수에 있어서도 신청서 양식의 간소화 부분입니다. 요즘은 오히려 신청양식이 간소화 되는 게 아니라 더 늘어나고 있다는 현장의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하는데요. 저희들은 여전히 텍스트에 기반한 심의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청방식은 변화를 줄 수가 없는가? 그것과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기술 등도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업심의 선정 및 발표 부분에 관해서도 지금은 저희가 사전심의를 하고 있고 과거에는 사후심의 방식도 했다고 봅니다. 모두 장단점이 있는 것이고 장르의 특성이 있는 것이니까 정밀하고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 심의위원선정기준인데요. 선정방식, 선정풀. 어떻게 제대로 풀을 확보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며 선정된 내용에 책임을 질 것인가의 부분들입니다. 저희는 사실 지금까지 주로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지원심사 얘기를 하다보면 이 논의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비전과 미션이 잡히면 전략과 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술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과 가치와 내용이 정해진다면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은 단순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정성의 담보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효과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사기준의 객관성, 공정성의 근거가 가능한가? 위원회 시스템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권한을 가지고 그 책임을 지는 것이 1차적 가치라고 봅니다. 앞서 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이게 가장 큰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나 시기와 변화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희 6기 갖은 경우 시작할 때 수월성보다 지역이나 여성, 신진 등을 배려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6기의 핵심가치죠.

그 다음에 사업평가의 부분들도 평가소위가 작동되고 있으니까 내용들을 봐야 되겠습니까만,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평가만 하는 게 아니라 평가의 공정성과 예산 문제, 저희는 지원만 하도록 되어 있지 평가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과 관련된 전체의 프로세스를 논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 ○박종관 위원장

- 시기, 특성, 다양성, 지원양식, 결산방식, 다양한 심의방식의 변화, 사후지원 등을 포함한 지원제도 전체, 심의위원구성, 지원구조변경, 객관성과 타당성, 그리고 평가 제도까지 전방위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저는 이 얘기를 1차 안을 받아놓고 하면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만약 논의 단계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위원님들과 이메일로 소통도 하고 8월 30일 이전까지 다양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혹시 추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 6. 폐 회 선 언

#### ○박종관 위원장

- 예, 6기 위원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높은 논의수준을 보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팝업시어터 대면사과 이후에 블랙리스트를 넘어서는 신뢰회복 프로세스가 작동된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도와주신 덕분에 회의를 잘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 254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15분 회의 종료)